

**브렉시트 관련  
영국 수출시 주의사항**

**2020. 11.**

**대한화장품협회**

본 보고서는 화장품 영국 수출과 관련하여,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

#### □ BREXIT - 일반사항

- 브렉시트(BREXIT)는 오랜 논의 끝에 확정됨
  - 2020년 1월 31일 : 영국의 공식적인 EU 탈퇴
  - 2020년 12월 31일 : 전환기간 종료
    - \* 전환기간(2020년 1월 31일 ~ 12월 31일) 동안은 EU 회원국의 법이 영국에 적용됨
- 영국총리는 전환기간 연장이 없음을 확실히 하였기 때문에, 2021년 1월부터는 브렉시트(BREXIT)의 실질적인 영향을 경험하게 됨

#### □ 영국 화장품 법 동향

- 영국-EU간 무역 쿼터, 관세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그러나, 현재 FTA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어 “노딜”이 될 가능성이 높음
  - “노딜”로 결정될 경우에는 EU와 영국 화장품 관련 담당 부처가 협력을 중단할 것이며, 장기적으로 볼 때, 영국의 화장품 규정은 EU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됨
- 2021년 1월 21일 이후 영국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으로 예측됨
  - 영국 내에서 유럽화장품 규정은 폐지되고, 영국의 자국법이 시행됨
  - 브렉시트 초반에는 영국이 EU 화장품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추후에는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

#### <참고>

#### 영국 화장품 법(UK Cosmetics Regulation)

- 비식품 제품(non-food goods)에 대한 영국 규제 『법정기구 (SI) 제품 안전 및 측정 등 (개정 등) 2019 규정』이 발표되었음  
The Statutory Instrument (SI)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. (Amendment etc.)  
<https://www.legislation.gov.uk/ukdsi/2019/9780111180402/contents>
- 본 규정의 SCHEDULE 34에 화장품 관련 규정이 수록되어 있음  
Amendment of Regulation (EC) No 1223/2009 and related amendments  
<https://www.legislation.gov.uk/ukdsi/2019/9780111180402/schedule/34>

□ 북아일랜드 관련

- 영국법이 영국 국경 전역에서 적용되나, 북아일랜드 지역은 예외임
  -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이고,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영국 영토이지만, 물리적 국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의됨
  - ※ 브렉시트 협정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영토이기는 하나 유럽연합 단일시장으로 남아 유럽연합의 시장규제를 받도록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□ 브렉시트로 인한 실질적인 변경사항

-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시장에서 화장품을 계속 판매하고자하는 회사는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함

**1 영국 RP(책임자) 지정**

-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에만 제품을 판매하기 원하면 영국 책임자가 필요하고, EU에만 제품을 판매하기 원하면 EU 책임자가 필요하게 됨
- 기존에 영국과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, 새로운 책임자 선임이 필요하게 됨. 가능하다면 영국과 EU를 동시에 지원하는 책임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
- 현재 RP(책임자)가 영국에 있는 경우, EU에 지사를 설치해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2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
  - ① 책임자는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함
  - ② CPNP 계정 생성 후 EU 집행위원회에서 수동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. 2020년 12월 31일까지 CPNP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

**2 제품 라벨 관련**

- 영국 판매용 제품의 경우, ①영국 내 책임자명 및 주소 기재 ②EU 또는 영국 이외 국가에서 제조했을 경우 원산지 표시 ③에어로졸 제품의 경우, 유럽 심블이 UKCA 마크로 변경되어야 함
- ※ 영국 화장품 규정 SI 초안(UK Cosmetics Regulation draft SI) 제19조에 따라, 포장에 EU 주소가 있지만 영국 주소가 없는 제품은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24개월 동

안 영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음

- EU 판매용 제품의 경우, ①EU 내 책임자명, 주소를 기재 ②EU 또는 역외 국가에서 제조된 경우 원산지 표기

### 3 영국 제품 신고 준비

-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신고 데이터베이스(시스템)를 오픈할 예정임
- 영국 RP는 영국 신고 데이터베이스(notification database)에 계정을 개설해야 함
- CPNP(유럽) 신고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영국의 신고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, 영국 시스템이 오픈되면 그쪽에 별도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
  - \* 시스템 오픈 후, 90일 이내로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야 함
  - \* 이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품 회사는 EU CPNP에 따라 기존 신고내용의 'xml'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함. 영국의 화장품 신고 데이터베이스(시스템)에 'xml'파일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함
- ※ 현재 CPNP에 등록된 RP(책임자)가 영국에 소재한 RP이고, 제품을 EU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,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EU에 소재한 RP로 변경하지 않으면, 해당 RP 계정으로 CPNP에 신고된 정보는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

### 4 제품정보파일(PIF) 관련

- 영국용 PIF: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, 영국 RP(책임자)명이 언급되어 있고, 영국에서 인정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안전성평가사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(CPSR)를 구비해야 함
- EU용 PIF: EU RP(책임자)명이 언급되고, EU내에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한 안전성 평가사가 서명한 안전성보고서(CPSR)를 구비해야 함